

「학칙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8. 3. 1. 개정 판 (시행 2018. 3. 1.) → 2019. 3. 25. 개정 판 (시행 2019. 3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94/compare?from=855&to=910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18:07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등록)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. <개정 2010-01-07> ② (장애학생 학점등록)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. [제2항 신설: 2004.12.13] 1.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2. 1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	제27조(등록)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. 단,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0-01-07> ② (장애학생 학점등록)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. [제2항 신설: 2004.12.13] 1.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2. 1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
제45조의2(졸업 유예) [본조 신설: 2017.2.27] ① 정규 8학기(건축학과 10학기)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졸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졸업 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	제45조의2(학사학위취득 유예) [본조 신설: 2017.2.27]<개정 2019-03-25> ① 정규 8학기(건축학과 10학기)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표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중 "<개정"을 "단,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"으로 한다.

제45조의2의 제목 "졸업 유예"를 "학사학위취득 유예"로 한다.

제45조의2 중 "2017.2.27]"을 "2017.2.27]<개정 2019-03-25>"로 한다.

제45조의2제1항 중 "본인이 졸업"을 "본인이 학사학위취득"으로 한다.

제45조의2제2항 중 "졸업"을 "학사학위취득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